



미국의 Big Data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이해량 연구원

■ 미국 백악관은 2014년 5월 1일 Big Data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공개함.¹⁾

- 보고서는 Big Data 분석 및 활용이 국민건강 증진, 기업 경영의 효율성 향상, 납세자들의 세금 절감 등에 기여한다고 밝힘.
 - Big Data 분석을 통한 질병, 소비 수요 예측 등은 국가기관 및 기업의 운영비용을 절감시키고, 이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은 Big Data의 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보고서는 Big Data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 등 사생활(privacy) 침해,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 있음.

- 보고서는 Big Data 활용을 위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고지와 동의만으로는 개인의 정보통제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음.
 - Big Data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전문가 패널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²⁾의 개정과 「정보유출통지법(National Data Breach Legislation)」³⁾의 통과를 촉구함.

1) The White House(2014, 5, 1), "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

2) 2012년 2월 온라인 채널에서 개인의 정보 이용과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목적으로 백악관이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개인의 정보통제권, 개인정보 관리의 투명성, 개인정보 보안, 정보의 정확성 등임.

3) 2011년 5월 제안된 사이버보안 관련 법안의 일부로 개인정보유출 사건 발생 시 해당 사건에 포함된 개인에게 정보유출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인데, 현재 주(州)별 법률안이 있고 연방법은 없음. 본 보고서에서는 정보유출통지 관련 연방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내용·활용 범위, 정보유출 시 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이를 개인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은 기존 법안들을 개정해야 함.
 - 또한 전문가 패널은 Big Data와 관련한 새로운 불평등 가능성을 지적하며, Big Data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함.
 - Big Data의 활용 및 분석은 첨단 디지털 기기 및 관련 지식을 소유한 계층만이 접근 가능하므로 Big Data의 활용 및 분석에 취약한 집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Big Data 도입 등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예를 들어 「전자통신과사생활보호법(EPCA: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Privacy Act)」을 비롯한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은 적용 범위를 이메일 등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에 국한하고 있는데 이를 온·오프라인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⁴⁾
- Big Data의 발전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올해 초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지난 3월 금융감독당국은 ‘개인정보유출재발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실행 될 수 있는 상황임.⁵⁾
-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되는 Big Data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함.

(The White House 등)

4) EPCA에는 현재 열어보지 않은 이메일이나 6개월 이상 지난 이메일의 경우 법 집행기관이 영장 없이 그 내용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으나 백악관의 보고서는 특정 이메일의 경우 일반서신보다도 보호 강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메일이 아닌 기타 디지털로 저장된 개인정보가 더 많음을 지적하여 EPCA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음.

5) ‘개인정보유출재발방지종합대책’은 2014년 초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과 과거 해킹사고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종합적 재발 방지가 목적이고,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금융회사 책임 강화,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기존 대책 보강, 이미 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대책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실행이 가능함.